

부천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5년 3월 16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5년 3월 1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05. 3. 18) 상정

○ 제1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05. 3. 18)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예술과장 최 인 용)

가. 제안이유

-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립예술단의 무료공연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각 예술단체의 공연시 사회복지시설 방문연주회, 청소년 문화 활동을 위한 학교방문 연주회, 축제 등 행사시 현장을 찾아가는 연주회 및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료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16조제1항)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p>○ 지금의 시점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의도는?</p>	<p>○ 지금까지 연주회를 하여온 시설과 학교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무료 연주회 실시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p>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64호
의결 년월일	2005.3.24 (제118회)

제출년월일 : 2005. 3. 16
제출자 : 부천시장

□ 제안이유

-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립예술단의 무료공연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각 예술단체의 공연시에 사회복지시설 방문 연주회, 청소년 문화활동을 위한 학교방문 연주회, 축제 등 행사시 현장을 찾아가는 연주회 및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료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 나. 각 예술단체의 공연 입장료는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부천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를 “부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로 한다.

제1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2항중 “문화관광부관람료징수기준에 의한다”를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시설 방문 연주회
2. 청소년 문화활동을 위한 학교방문 연주회
3. 축제 등 행사시 현장을 찾아가는 연주회
4.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제1호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동조 제2호중 “병역법”을 “「병역법」”으로 하고, 제6조제1항제4호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하며, 제12조제1호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동조 제2호중 “병역법”을 “「병역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u>부천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u></p> <p>제16조(입장료의 징수 및 협연료의 수입) ①각 예술단체의 공연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u><단서 신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는 <u>문화관광부관람료징수기준에 의한다.</u></p> <p>③ · ④(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부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u></p> <p>제16조(입장료의 징수 및 협연료의 수입) ①----- -----</p> <p><u>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사회복지시설 방문 연주회</u> <u>2. 청소년 문화활동을 위한 학교 방문 연주회</u> <u>3. 축제 등 행사시 현장을 찾아가는 연주회</u> <u>4.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p>②----- --- <u>시장이 따로 정한다.</u></p> <p>③ · ④(현행과 같음)</p>